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합 계 | 261,416,014 | 7,842,480 |
| 일반회계 | | 196,281,357 | 5,888,441 |
| | 일반회계 | 196,281,357 | 5,888,441 |
| 기타특별회계 | | 65,134,657 | 1,954,040 |
|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4,588,965 | 137,669 |
|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83,894 | 14,517 |
| |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864,729 | 25,942 |
| |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| 25,846,776 | 775,403 |
| 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8,988,594 | 269,658 |
| 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11,891,265 | 356,738 |
| |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| 1,975,000 | 59,250 |
| 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9,923,234 | 297,697 |
| |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| 502,000 | 15,060 |
| | 기반시설특별회계 | 70,200 | 2,10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생략"

제 4 조 "생략"

제 5 조 "생략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49,02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